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후 적정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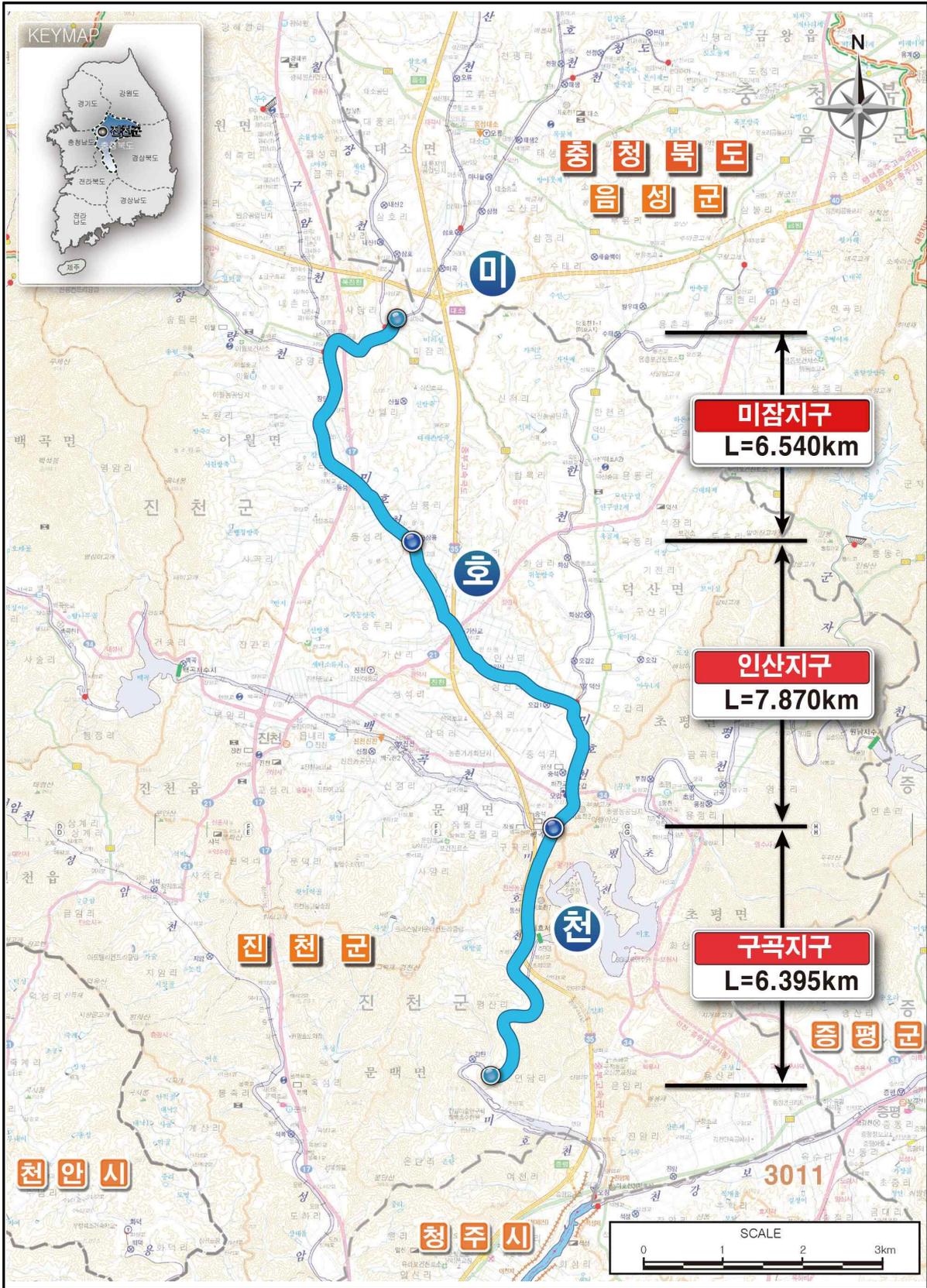
1.2.1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일원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과 업 구 간

하천명	과업구간	행 정 구 역	하천연장 (km)
미호천 (국가하천)	미잠지구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일원	6.540
	인산지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이월면 일원	7.870
	구곡지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일원	6.395
	계		20.805

1.2.1 추진경위 및 계획

- 2021. 08~09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2021. 1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2. 04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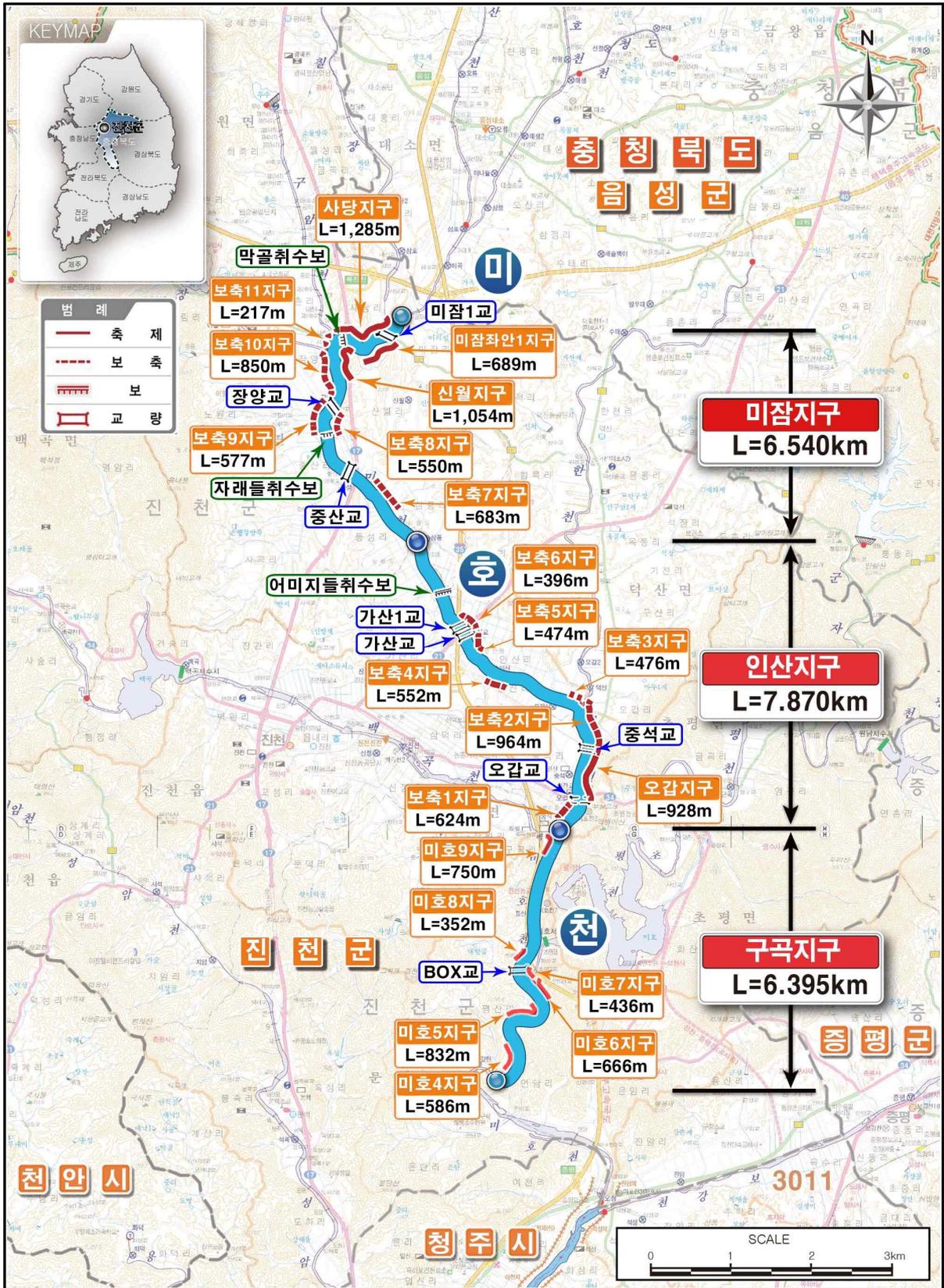
(그림 1 - 1) 위치도

1.2.3 사업계획(안)

〈표 1 - 1〉 사업계획(안)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미잠지구	하천개수	축제	개소	3	-
			연장	3.028km	· 제방연장
		보축	개소	5	-
			연장	2.877km	· 제방연장
	교량	재가설	개소	3	· 중산교, 장양교, 미잠1교
	보		개소	2	· 자래들취수보, 막골취수보
인산지구	하천개수	축제	개소	1	-
			연장	0.928km	· 제방연장
		보축	개소	6	-
			연장	3.486km	· 제방연장
	교량	재가설	개소	4	· 오갑교, 중석교, 가산교, 가산1교
	보		개소	1	· 어미지들취수보
구곡지구	하천개수	축제	개소	6	-
			연장	3.622km	· 제방연장
		보축	개소	-	-
			연장	-	-
	교량	재가설	개소	1	· Box교(L=109m)
	보		개소	-	-

주) 지구별 사업계획은 관계기관 의견 등의 반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림 1 - 2) 사업계획(안)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본 사업의 주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 - 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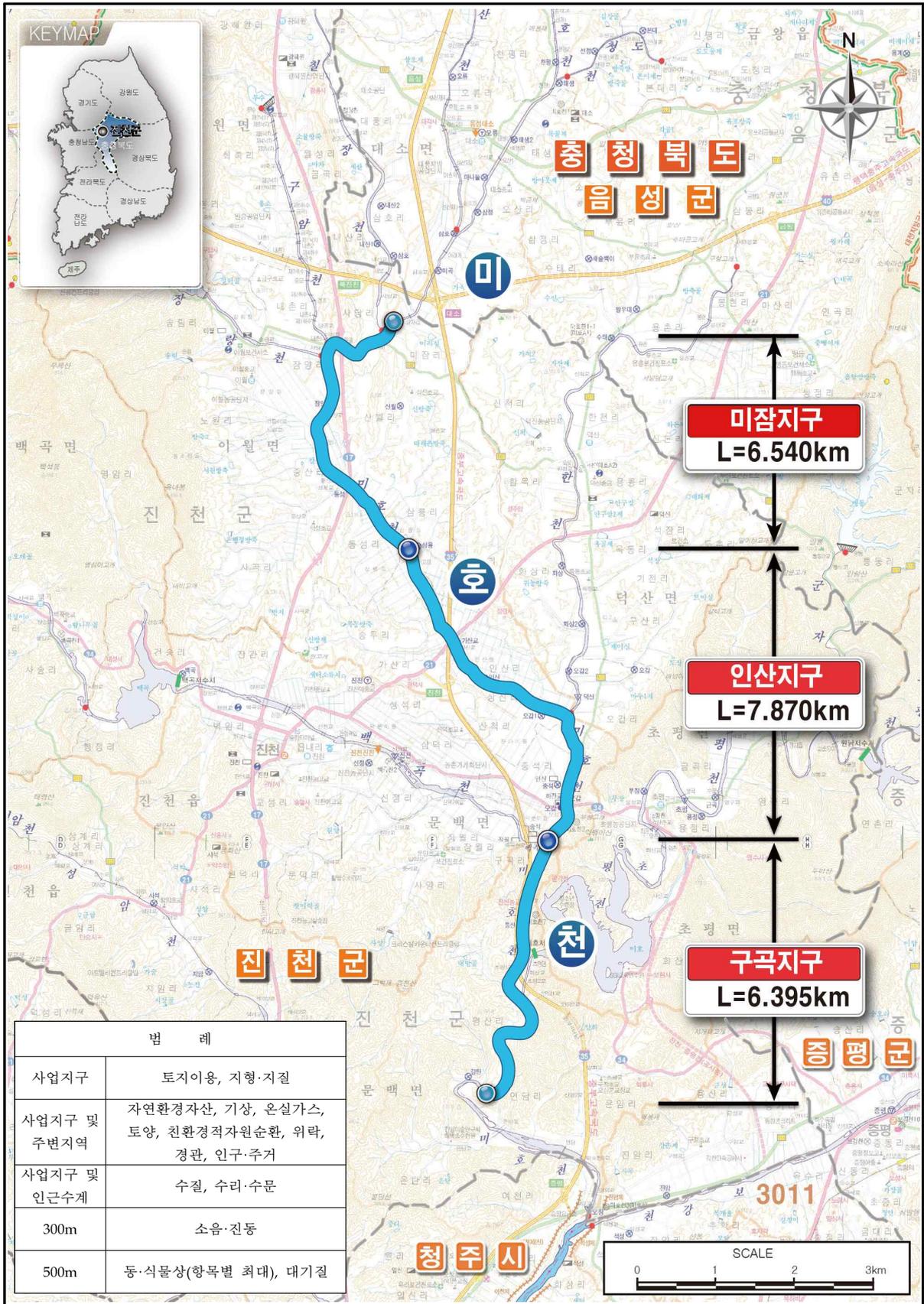
항 목		평가대상지역범위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공간적	시간적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분류군별 적용 ^{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식물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외지 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사·과충류, 육상곤충</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m (하천중심선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포유류, 조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m (하천중심선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m (지구 경계 상·하류기준)</td> </tr> </table> ○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 륙습지, 철새도래지 등	식물상	제외지 내	양사·과충류, 육상곤충	150m (하천중심선 기준)	포유류, 조류	500m (하천중심선 기준)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100m (지구 경계 상·하류기준)	공사시 운영시	○ 동·식물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식물상	제외지 내										
양사·과충류, 육상곤충	150m (하천중심선 기준)											
포유류, 조류	500m (하천중심선 기준)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100m (지구 경계 상·하류기준)											
자연환경자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대기환경	기 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예측 및 분석 기초 자료로 이용								
	대 기 질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약 500m ^{주2)}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으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온실가스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으로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	수 질	○ 사업지구 및 인근수계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으로 영향예상 수계 ○ 운영시 하천정비로 하천의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수계								
	수리·수문	○ 사업지구 및 인근수계	공사시 운영시	○ 하천정비로 홍수량 등 수리·수문의 변화가 예상되는 수계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에 제시된 선형사업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2. 대기질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에 제시된 하천사업 평가범위를 고려하여 500m로 설정하였음
 3. 소음·진동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제시된 소음·진동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300m로 설정하였음

〈표 2 - 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범위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공간적	시간적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하천정비로 제내지와 제외지의 토지 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토 양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 지장물 철거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지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 및 하천형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및 인부 운용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약 300m ^{주3)}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위 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하천정비로 주변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경 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제방축제, 보축, 호안정비 등 하천정비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토지편입 등 재산권 영향예상지역

-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에 제시된 선형사업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2. 대기질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에 제시된 하천사업 평가범위를 고려하여 500m로 설정하였음
 3. 소음·진동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제시된 소음·진동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300m로 설정하였음



(그림 2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2.2.1 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

가.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제2조에 의하면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함
- 따라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요소는 사업계획의 특성과 주변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출하였음

〈표 2-2〉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환 경 영 향 요 소	세 부 내 용
공 사 단 계	○ 토공사(제방보축, 축제, 교량 등)	○ 제방보축, 축제 등으로 부유물질 발생, 하천생태계 일시적 교란, 하천지형 변화 등
	○ 지장물의 철거	○ 하천구역 내 및 제내지 지장물 등 철거 ○ 지장물 철거로 건설폐기물 등 발생
	○ 재료의 운반	○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운반
	○ 장비 및 인력 투입	○ 공종별 장비투입으로 비산먼지, 배기가스, 소음진동 발생 ○ 공사인력 투입으로 생활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운 영 단 계	○ 제내지 및 제외지 토지 편입	○ 토지이용현황 및 하천 지형 변화
	○ 하천시설입지(제방, 교량 등)	○ 제방, 교량 신설 등 하천상태 변화

나.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추출된 환경영향요인과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환경인자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 항목간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였음
-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여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환경항목에 대해 정성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기호로 표시하였음

〈표 2-3〉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환경영향요소		공 사 단 계				운 영 단 계	
		토공사	지장물 철거	재료 운반	장비 인력 투입	토지 편입	하천 시설 입지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	▲	-	-	●
	자연환경자산	●	▲	-	-	▲	●
대기환경	기 상	-	-	-	-	-	-
	대 기 질	●	●	●	●	▲	-
	온실가스	-	-	-	▲	△	-
수환경	수 질	●	▲	-	▲	-	△
	수리·수문	●	-	-	-	○	○
토지환경	토지이용	-	-	-	-	▲	-
	토 양	▲	▲	-	▲	-	-
	지형·지질	▲	○	▲	-	-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	△
	소음·진동	●	●	●	▲	-	-
	위 락	-	-	-	-	▲	△
	경 관	-	-	-	-	△	△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	-	-	-	▲	△

주) □ 시행하면 상당히 좋다, ○ 시행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시행되면 긍정적이나 영향은 미약하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보통 정도이다), ■ 악영향이 크다

1) 중점 평가항목

- 본 사업의 사업내용과 지역특성, 주변 환경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항목은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표 2 - 4〉 중점 평가항목의 선정사유와 평가사항

중 점 평 가 항 목		선 정 사 유	평 가 사 항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육상 동·식물상에 대한 영향발생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육수생태계에 영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동·식물상 영향 검토 ○ 토사유출 등에 따른 주변 육수생태계 영향 검토 ○ 각종 보호생물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대기 환경	대 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비 운용에 따른 대기질의 변화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비산먼지와 배가스 발생 오염물질별 대기질 예측
수환경	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하천 하류 부유물질 가중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 부유물질 가중 영향 검토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에 따른 홍수량, 홍수위 등 변화 ○ 하천정비에 따른 하천폭, 제방계획 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에 따른 홍수량, 홍수위, 하천폭, 제방계획 등 검토
토지 환경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계획에 따른 토지편입 등 토지이용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변화 검토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깎·쌓기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로 변경, 하천폭 변경, 호안사면 등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인부 폐기물 및 분노 발생 ○ 지장물철거 등 건설폐기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별 폐기물량 산정, 처리방안 수립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비의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보강 등 구조물 조성에 따른 경관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변화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2) 일반 평가항목

- 중점 평가항목 외 환경영향이 미약한 항목은 현황조사 또는 타 항목의 예측·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일반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표 2-5〉 일반 평가항목의 선정사유와 평가사항

일 반 평 가 항 목		선 정 사 유	평 가 사 항
자연생태환경	자연환경자산	○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 각종 보호구역, 보호종에 대한 영향여부 검토
대기환경	기 상	○ 대기질 예측의 기초자료	○ 기상대 자료 분석
	온 실 가 스	○ 토지이용 변화 및 장비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 토지이용계획,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검토
토지환경	토 양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 토양오염현황 파악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입지 여부 검토
생활환경	위 락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위락시설 이용변화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시설 이용변화 검토
사회·경제환경	인 구 · 주 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인구·주거 현황 및 사업시행으로 인구·주거 변화 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구 및 주거 영향 검토

3) 평가 제외항목

- 중점 평가항목 및 일반 평가항목 이외의 항목은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항목으로 본 평가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2-6〉 평가 제외항목의 선정사유

평 가 제 외 항 목		제 외 사 유
대기환경분야	악 취	○ 공사시 및 운영시에 따른 악취 발생 영향은 미미함
수환경분야	해 양	○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활환경분야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에 따른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전 파 장 해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일 조 장 해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유발요인 없음
사회·경제환경	산 업	○ 사업시행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2.2.2 환경현황 조사계획

- 환경현황 조사는 본 사업 시행시 환경현황 파악,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황조사는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환경질에 대하여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임

〈표 2-7〉 현황조사 항목 및 세부조사내용, 지점수

구 분	세 부 현 황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식물상(식물상 및 식생,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육상동물상(육상동물의 중 분포상황, 법정 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등) ○ 육수생태계(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등) ○ 법정보호종 분포 현황 등 	○ 분류군별 적용 ^{주)}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식물상</td> <td>제외지 내</td> </tr> <tr> <td>양서·파충류, 육상곤충</td> <td>150m (하천중심선 기준)</td> </tr> <tr> <td>포유류, 조류</td> <td>500m (하천중심선 기준)</td> </tr> <tr> <td>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td> <td>100m (지구 경계 상·하류기준)</td> </tr> </table> ○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륙습지, 철새도래지 등	식물상	제외지 내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150m (하천중심선 기준)	포유류, 조류	500m (하천중심선 기준)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100m (지구 경계 상·하류기준)	3회 (조류는 동계 조류 조사 포함 4회)
식물상	제외지 내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150m (하천중심선 기준)										
포유류, 조류	500m (하천중심선 기준)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100m (지구 경계 상·하류기준)										
대 기 질	○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8개 항목)	6지점	3회								
지 표 수 질 (지표수량 및 수질)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총인, 총질소, 총대장균군, 클로로필-a,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19개 항목)	13지점	3회								
하 천 저 질	○ 입도분포, 강열감량, 황화물, COD,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니켈, 총질소, 총인(13개 항목)	11지점	3회								
토 양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류,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18개 항목)	6지점	3회								
소음·진동	○ 등가소음도 및 진동레벨	6지점	3회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에 제시된 선형사업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2. 조사지점 및 횟수 등은 평가준비서 심의내용과 초안 검토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나. 의견수렴 경위

- 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다.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주민은 공람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진천군 해당)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기간 중 1회 실시(설명회 장소는 해당 지자체와 추후 협의)
 - 설명회 개최 7일전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지자체 협조 하에 현수막 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

3.2 의견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진천군 해당)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 의견 수렴결과 공개 : 시행령 제43조

제4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공청회 개최요건 :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40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주관부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심의기간 : 2021년 08월 23일 ~ 09월 16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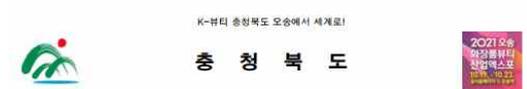
구 분	연 번	소속기관	성 명	비 고
위원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	승인기관
	2	한국환경연구원	신○○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3	금강유역환경청	김○○	협의기관
	4	충북대학교	김○○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위촉)
	5	충청북도	오○○	지자체
	6	진천군	이○○	지자체
	7	진천군 주민대표	임○○	지자체 주민대표
	8	청주국제에코 콤플렉스	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p>○ 본 사업은 미호천 내 20.805km 구간에 대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설정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설정한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와 그 주변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적으로 예측하여야 함 ○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조사와 함께 문헌자료를 충분히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평가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2021. 9. 3. 심의위원 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최강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KEI</p> <p>KEI 한국환경연구원</p> <p>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p> <p>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회신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용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관리과-2783(2021.08.23) 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토의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하여 불합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p>붙임 :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연구원</p> <p>담당 김 (인) 2021. 9. 1. 대령 부서장 전담</p> <p>참조자</p> <p>시행 환경평가본부-19385 (2021. 9. 1.) 김수 건설관리과-2926 (2021. 9. 1.)</p> <p>주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드라운)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전화번호 044-415-7716 팩스번호 044-415-7744 / khahin@kei.re.kr / 대국민 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연계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하천구간에 대한 기 수립 또는 실시된 하천 정비사업을 확인하여 연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인하여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과거 홍수피해 이력, 관련계획(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연계성, 사업지구에 대한 홍수 위험성 등 실시계획 추진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5. 약식평가 신청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1.08. 31. 심의위원 신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유역환경청</p> <p>환경부</p> <p>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p> <p>제목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알림(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2783(2021. 8. 23)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심의 요청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을 불인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p>붙임 : 심의의견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유역환경청장</p> <p>주무관 김 (인) 2021. 9. 3.</p> <p>참조자</p> <p>시행 환경평가과-6928 김수 건설관리과-2952 (2021. 9. 3.)</p> <p>주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태학로 417 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gg/</p> <p>전화번호 042-865-0755 팩스번호 042-865-0759 / lacinne@me.go.kr / 비공개(5)</p>

민간전문가(한국환경연구원)

협의기관(금강유역환경청)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의견은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기수립 기본계획, 주변 하천의 기본계획,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들과 의사결정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기본계획 대비 급회 실시설계 구간의 수리해석결과(홍수량 및 홍수위)는 물론 사업내용(개방, 호안 등 홍수방어 수단.방법)과 규모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 - 계획 하천과 관련하여 최근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종합 계획 반영 여부 제시, 급회 치수계획의 필요성(해해 위험성, 홍수방어 수단.방법 및 규모)을 비교하여 불필요한 계획 지양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은 인근에 퀘세도래지인 초평지 및 미호천 중석습지, 장월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미호천 좌상류지역 하천기본계획(2018), 미호천 상류지역(0) 하천기본계획(2018)) 현기조사 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가 양호한 하천으로, 사업시행으로 대기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최대한 대상지역을 확대·설정하여야 함 ○ 계획하천 및 상·하류 등 주변에 위치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수원 및 하천수질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야 함 <p>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세부사업에 대한 공법, 이·치수에 따른 사업규모 및 복원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 및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p>3.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p> <p>○ (현황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사중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에 따라 해당 항목별 활동이 활발한 시기(5-8월)에 조사 실시 - 수질 조사는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주거 밀집지 등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선정 - 계획구간의 기상 분석자료는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경관의 경우, 사업지구의 경관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경·중경·원경 별로 가시권분석을 실시하여 충분한 수의 조망점 선정 - 현재 하천원형(호안상태 등) 및 주변 현황(경관손실 등)을 도면(신축도·항공사진 등)에 표기하여 인근의 전반적인 현황 제시 <p>○ (동·식물상) 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현황을 조사·제시하고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전방안 수립</p> <p>○ (지형지질 및 수리수문) 개발 및 형식시설물(보·낙차공, 교량) 설치, 하도정비, 유도·변경 등 각종 개수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 하고 불필요한 개발을 지양해야 함</p> <p>○ (수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호천은 금강수계에서 오염부하가 높은 하천으로, 현 수질을 토대로 관련 수질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목표수질 설정, 수질관리계획 수립해야 함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환경보호구역 내의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보호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여부 판단 <p>○ (토지이용)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과 관리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하천 공간관리계획 수립</p>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립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요약서를 작성·제공하고 공람장소는 대상지역 내 시·군 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p style="text-align: right;">2021.9.2. 심사위원 김 []</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금강유역환경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기술되었으나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길 바름.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구를 미장, 안산, 구곡지구로 나눈 기준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음. <p>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사업 시 구곡지구에 위치한 농다리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p>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45: <표 5-3>의 수질에서 "부유물질 및 인(P)" 기준 영향 평가. 부유물질이 증가하면 인의 농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p.49: <표 5-7>의 "지표수질"은 "지표 수향 및 수질"로 수정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함 <p>5. 혁신평가 신청가능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지 않음 <p>6. 기타(별기준별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37: 4.5.1 취수시설에 농업용 취입부 제외(여도의 설치여부 포함) 소제 ○ p.38: 4.5.3 문화재에 구곡지구에 위치한 농다리에 대한 현황 소제 <p style="text-align: right;">2021. 9. 6. 심사위원 김 []</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금강유역환경청)</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p>충청북도</p> <p>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출(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2783호(2021. 8. 24)와 관련하여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심의의견서 1부. 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p>충청북도청사</p> </div> <div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p>주무관 [] (2021. 8. 26.) / 전화 201. 8. 26.</p> <p>협조사 [] (2021. 8. 26.) / 접수 건설관리과-2860 (2021. 8. 26.)</p> <p>시행 환경정책과-12900 (2021. 8. 26.) / 접수 건설관리과-2860 (2021. 8. 26.)</p> <p>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환경정책과 / http://www.chungbuk.go.kr (분화용)</p> <p>전화번호 043-220-4023 팩스번호 043-220-4029 / dms8942@korea.kr / 부분공개</p> <p>"아시아 최고의 화합물 수출진흥 전문서비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전문가(충북대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충청북도)</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p>○ 본 사업은 미호천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이용, 보존 및 항구적인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용근거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p> <p>○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p> <p>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p> <p>○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p> <p>○ 생태·경관 환경이 우수한 지역 통과, 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p> <p>○ 계획 시행 시 사업지역의 지형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호안 조성 시 법면 완경사 조성,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며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p> <p>○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질, 수리·수문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함.</p>	<p>- 강수, 기상,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하천의 지형·형상 등 생태적 보전까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p> <p>-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한 수리·수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p> <p>- 동·식물상은 문헌조사, 하천구간별 조사(수생태계 포함)를 통한 사업구역 내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분포여부를 조사·제시하고 보전방안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p> <p>-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시행</p> <p>-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정은시설(주거지역, 가족사육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을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사업시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하천정비 공사 예정 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 <p>5. 기타</p> <p>○ 상위계획 및 관계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1. 9. 6.</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오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충청북도)</p>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충청북도)</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p>○ 본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라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계획 노선의 생태계현황을 고려하여 지형훼손 및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p> <p>3. 대안</p> <p>○ 대안의 비교 검토시 각 대안에 따른 구체적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의 비교, 환경적 특징)를 구분 하여 작성하여야함.</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공사시 발생하는 민원발생(소음·진동, 비산먼지)의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하여야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본사업은 공사 구간이 긴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평하게 수렴하여야함.</p>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공사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가 없도록 평가서를 제시 하여야함.</p> <p>○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 할당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1. .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인]</p> <p>자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2013.1.1. 환경부</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천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p>○</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p> <p>○</p> <p>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p>○</p> <p>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p> <p>○</p>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p> <p>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p> <p>○</p> <p>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서 고려사항 등을 참고)</p> <p>○</p> <p style="text-align: right;">2021. 9. 6.</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진천군)</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미호진 인산지구 등 3개소 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 안전차원에서 축제, 보축공사 등이 시행될 때, 공사과정, 시설물로 인한 수중 생태계의 교란, 인근생태계와의 단절, 공사과정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종의 유입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 ○ 생물종의 보전에 있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생물종 보호 뿐 아니라 자생생물종 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기존생태계 피해 최소화)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보축 공사로 하천내 중장비 유입시 수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흙탕물 발생 유와 및 오락방지막 설치 ○ 축제, 보축으로 인한 인접한 생태계와의 단절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경사도를 완사면 설계, 친환경계 활용 호안공법 도입(호안의 유형에 따라 필요시 생물이동통로 설치) ○ 공사로 인한 생태계교란생물 유입 확산 방지대책 수립 ○ 하상준설은 수중생태계를 심하게 교란시킴으로 공사중 준설 최소화 ○ 보로장은 아니더라도 자생생물종 총량 보전은 매우 중요하며,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는 공사의 경우 어류의 산란시기 회피노력 ○ 축제, 보축공사의 경우 직선화하고 하상을 평탄화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및 교란이 심각함으로 이를 최소화 하고, 부득이 공사시에는 향후 자연스러운 어류, 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공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조사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양서류 조사시 산란기(산개구리 등 활동, 알방이 장마기 등)를 고려한 조사 시기 선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개·공람서 기관 비치문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표인 	<p style="text-align: center;">이장, 동장 뿐 아니라 주민에게 문자 등을 통한 직접 공시게요를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p> <p>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p> <p>6. 기타</p> <p style="text-align: right;">2021. 9. 6.</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김 [redacted]</p>
<p>민간전문가(시민단체 추천)</p>	<p>민간전문가(시민단체 추천)</p>
<p>-</p>	<p>-</p>